

茶山의 명판결과 조선의 법 풍속(14)

조선 최악의 패륜사건

1785년(정조 9) 4월 황해도 평산에 사는 과부 최 씨가 당질 조광진과 몰래 간통하다가 최 씨의 며느리 박 씨가 이를 알고 소문을 퍼뜨릴까 겁이나 조광진과 더불어 박 씨를 살해하였다. 양반가에서 벌어진 음란한 사건인데다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살해하고, 조광진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군졸과 노비를 사주하여 거짓 증언하도록 하는 등 조사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더욱이 사건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채 수년이 흘러 조광진과 이차망 등 중요한 피의자들이 옥사하였으며 사건을 조사했던 사또와 황해도 감사 등이 파직되기도 했다.

중요한 피의자인 조광진은 자백 후 처벌을 기다리다 병사하자 정조는 조광진이 죽은 데다 풀리지 않은 의혹이 남았다고 판단하여 시어머니 최 씨를 사형에 처하지 않은 채 장 100대에 2천리 유배형으로 감형하기도 했다. 후일 다산은 본 사건의 처리과정을 읽고 나서 애초에 조사가 부실하여 사건을 끝다가 죄 없는 이차망은 감옥에서 죽고 참형에 처해져야 할 조광진마저 범대로 처벌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사또들과 형조 관리들을 비판했다.

초검·복검관, “박 씨는 자살하였다” 결론

1785년 4월 당시 평산부사 정경증은 본 사건을 며느리 박 씨의 자살로 결론지었다. 이미 최 씨가 양반댁의 과부로서 행실이 아름답지 못하여 평판이 나빴는데 며느리 박 씨가 알면서도 없던 일로 여기고 성심껏 잘 모셨지만 최 씨가 반성하지 않은 채 도리어 노여운 감정을 품고 날로 며느리를 팅박하니 박 씨가 원망하다가 결국 자살했다는 것이다. 시어머니 최 씨가 박 씨를 직접 칼로 찌르지는 않았지만 협박하여 죽게 한 위법조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경증은 죽은 박 씨의 팔에 묶인 흔적이 없고 손으로 칼을 막은 자국이 없다는 증거를 들어 타살이 아닌 자살로 추론하였다. 후일 다산은 묶인 흔적이 없고 칼을 막은 자국이 없는 사실을 단지 자살의 증거로 취급할 게 아니라 누군가 공범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더욱 상세하게 조사했어야 한다고 정경증을 비판했다.

한편 복검관 배천군수 이서희 역시 초검과 마찬가지로 박 씨의 자살로 사건을 종결지었다. 그는 ‘박 씨의 상처가 깊고 얇음이 서로 다르고 칼을 처음 댄 부위와 거둔 곳의 깊이가 다른 것으로 보아 ‘무원록’의 스스로 목을 찌른 조문과 일치하므로 스스로 목을 찌른 자살이 분명하다’고 보고하였다. 며느리 박 씨의 마음에 부끄럽고 원통함이 가득하여 사



글 김호 경인교대
사회교육과 교수
kimho@ginue.ac.kr
글쓴이는 서울대학교 국
사학과 졸업 후 동대학원
에서 석사·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서울대 규장각
특별연구원, 가톨릭대학
교 교양교육원 교수 등을
지냈다. 저서로 ‘허준의
동의보감 연구’, ‘조선의
명의들’, ‘조선과학인물
열전’ 등이 있다.



▶ 간통 남녀의 체포

는 게 죽느니만 못하였으므로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도 추정하였다.

다산은 이서희가 ‘무원록’의 ‘스스로 찔러 다친 칼의 자국은 한 곳뿐이요, 한번 다친 후에 다시는 스스로 베지 못 한다’는 명백한 구절은 무시하고 전연 적당하지 않은 문장을 인용하여 사건을 은폐하였다고 비판했다. 박 씨의 목에 칼로 찌른 상처가 네 군데라면 이는 스스로 찌르지 않았다는 분명한 증거인데도 말이다.

신임 황해도 관찰사, “최 씨가 살해” 보고

조사의 미진함은 사또 수준에서 그치지 않았다. 당시 황해도 관찰사 홍병찬은 초검과 복검관의 보고를 그대로 믿은 채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며느리 박 씨가 처음 시집 와서 시어머니 최 씨의 음행을 알고 부끄러워

하다가 더러운 말을 셋기 어렵게 되자 변명 대신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마음먹었음이 분명하다고 보고했다. 결국 홍병찬은 성실하게 조사하지 않은 죄로 파직되었다.

그리고 곧바로 새 관찰사 엄사만이 부임하였다. 그는 철저한 조사를 거쳐 기왕과는 다른 결론을 내렸다. 본 사건은 시어머니 최 씨의 단독범행이라는 것이다. 엄사만은 “최 씨는 아들이 어리고 며느리가 시집 온지 얼마 되지 않아 함부로 음란한 행동을 하다가 간통의 자취를 며느리 박 씨에게 들키자 이를 임막음하려 마음먹고 있었다. 사건 당일 신부가 우연히 두통으로 이불을 덮고 누워있었는데 음탕한 시어머니가 이 틈을 타 뛰어들어 칼로 한번 찌르자 숨구멍은 끊어졌는데 오히려 죽지 않을까 걱정하여 계속 어지럽게 찔렸고, 허둥지둥하면서 감히 자취를 덮어버릴 계획으로 며느리 박 씨의 시신을 끊어앉히고 그 목을 잡아 매달아 스스로 목매고 스스로 칼로 찔러 자살한 것처럼 위장했으니 그 광경을 상상하면 모골이 송연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특히 엄사만은 초검관과 재검관이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유가 조 씨 집안과 친인척 관계일 뿐 아니라 한 스승 밑에서 수학한 동문이라는 사실을 죽은 박 씨의 오빠 박용해로부터 알아냈다. 조광진을 비호하려던 초검, 복검사또들이 면직되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신임 황해감사 엄사만마저 조사 중 관련자들을 심하게 주리 틀었다가 파직되고 말았다.

암행어사를 파견하라

황해도 관찰사 엄사만의 고문수사를 알게 된 정조는 규장각 각신 이곤수를 암행어사로 파견하였다. 이곤수는 자질이 매우 뛰어나 평소 정조의 무한한 신뢰를 받던 인물이었다. 1787년 2월 정조는 하교를 내렸다. “평산의 이번 사건은 의심스런 옥사인 데다가 간통 사건의 정황마저 떠고 있어 애매하고 추잡하며 간계와 속임수가 다양한 탓에 해를 넘기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고도 아직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니, 만일 의혹으로 결정된다면 최 여인을 사형에 처할 수 없지만, 간통 사건으로 판결하면 박 여인의 원통함을 빨리 셧어 주어야 할 것이다. 시비가 분명히

밝혀져야 하는데 멀리서 헤아리자니 직접 보고 살피는 것과 다르고, 더구나 전후 관찰사의 보고서가 전혀 달라 비록 한쪽을 지지하고 한쪽을 누르려고 해도 의심스럽기도 하고 간통이 분명한 것 같기도 하니 어찌하겠는가. 당일로 하직 인사를 하고 조사관과 함께 관련자들의 공초를 받아오라.”

4월 이곤수는 두 달여의 암행 결과를 임금에게 올렸다. “신이 평산부에 달려가서 재령군수, 배천군수 등과 함께 관련자들을 모두 잡아다가 조사하였는데, 조광진은 ‘이 경에 이르러 어찌 반드시 고문을 받은 뒤라야 바른대로 답하겠습니까. 박 여인을 죽일 때 광경으로 밀하자면 둑어 놓고 목을 조른 것은 저와 죄 씨가 힘을 합하였습니다. 또 저와 죄 여인이 지친(至親)이고 죄 여인의 아들 조광선이 나이가 어려 남의 이목이 신경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간통하다가 이렇게 용서받기 어려운 죄를 범하였습니다. 며느리 박 씨가 시집온 뒤에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1785년 4월 15일 죄 씨가 우리의 일을 며느리가 알고 있으니, 죽여 입을 막지 않는다면 장차 큰일을 초래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20일 아침에 아들 조광선은 안장을 빌리러 마을로 출타하고 집안의 노복들은 나물을 캐러 나간 뒤에 저와 죄 여인이 힘을 합해 사람의 목숨을 해쳤습니다. 목을 조르는 것은 제가 먼저 손을 대었고 목을 찌르는 것은 죄 여인이 먼저 손을 대었습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또한 신이 몰래 마을을 왕래하며 여론을 탐문하니 모두 한결같이 ‘박 여인의 원통함을 씻어 주어야 하고, 조광진은 죽어도 애석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다시 피의자들을 엄문하니 조광진이 죄 여인과 간음한 연월 및 박 여인을 찌르고 목 조른 절차를 낱낱이 승복하였습니다. 이로 본다면 간음한 자취와 사람을 죽인 절차에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옥사는 살육이면서 동시에 음옥입니다. 죽일 꾀를 내거나 이에 협조한 것은 본래 차이가 없습니다만, 억지로 주범과 종범을 구분한다면 죄 여인은 음란한 아낙네이자 사나운 시어미로 그 소행을 따져 보건대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마는 백주에 살인은 여자가 감히 마음먹을 일이 아닙니다. 조광진이 둑어 놓고 목을 졸랐으며 찌르고 또 찔렀다고 낱낱이 진술하였으니 주범으로 단정하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는

듯합니다. 안으로는 간사한 계집종을 위협하고 밖으로는 교활한 장교와 결탁하여 이차망을 끌어들여 죄를 덮어씌우는 등 구구절절이 음흉하고 참혹합니다. 죄인 죄 씨와 조광진, 그리고 이차망은 일체 형구를 채워 엄히 가두어 두고 처분을 기다립니다.” 암행어사 이곤수는 조광진을 정범으로, 죄 씨를 종범으로 보고하였다.

다산, 주범과 종범 바꿔 보고한 형조 비판

형조에서는 이곤수의 암행보고서를 함께 읽은 후 비로소 의문이 사라졌다고 높이 평가하였다. 그리고 공식적인 형조의 심리 의견을 임금에게 올렸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형조는 “지친의 간음은 윤리와 도덕에 크게 관련됩니다. 특히 형률에 주모자는 참형이요, 공범자는 교수형이라고 했으니 비밀을 아는 사람을 죽이려고 계책을 세운 이는 죄 씨요, 힘을 합쳐 범행을 저지른 자는 조광진입니다. 죄 씨는 조광진과 소공친(小功親)의 가까운 사이요, 또한 상천이 아닌 양반 씨족의 부녀이니 ‘속대전’의 양반 부녀로 정욕을 자행하여 풍속을 어지럽힌 자는 간통한 사내와 더불어 교수형에 처한다는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암행어사 이곤수의 판단과 달리 죄 씨를 주범으로, 조광진을 종범으로 주장한 것이다.

후일 다산은 형조의 이러한 판결을 매우 잘못되었다고 비판했다. “조광진은 집안 숙모를 간통하여 죽을죄를 저지르게 하였으니 첫째 살인이고, 사생아를 낳아 몰래 죽여 묻었으니 두 번째 살인이고, 칼을 들고 박 씨를 살해하였으니 세 번째 살인이고, 이차망을 허위로 고발하여 죽을 곳으로 빠뜨렸으니 네 번째 살인이다. 이런데도 참형을 판결하지 않는다면 나라에 실로 법이 없는 것이다. 형조가 심리를 잘못하여 조광진에게 주범이 받을 참형이 아닌 교수형을 판결하여 후일 법가의 분분한 논의를 야기하였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다산은 형조가 주범 조광진을 참형으로 즉시 처벌하도록 임금에게 아뢰지 않은 결과 교수형을 기다리던 조광진이 감옥에서 병사하여 죽음을 제대로 치르지 않았다고 비판하였다. 다산은 성실하고 엄격한 조사에 근거한 정확한 판결이야말로 죄인을 공정하게 처벌할 수 있는 유일의 방도임을 누누이 강조하였다. ◎